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558
--------	--------	-----

제출년월일 : 2000. 5. 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99. 8.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 및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안 제6조).

-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
-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을 규정 (안 제6조).

-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25-40%미만)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함.

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완화 (안 제10조).

-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 완화.

라.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안 제12조).

-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함.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를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을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중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를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중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호중 “제2호의”를 “제3호의”로 하여 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호중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를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6조제1항의”를 “법 제12조의”로 하며, “수거용기에”를 “전용수거용기에”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를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를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자원화하는 시설”로 한다.

제14조·제15조를 제15조·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호과 ☎ 940-4251
입안자	환경보호과장	박철순
	청소담당	김근희
	담당자	이명수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u>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u> 등을 말한다.		1. ----- ----- <u>농·수·축산물류 쓰레기</u> 와 -----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2. ----- ----- <u>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u> -----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u>·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u>		3. ----- <u>가열에 의한 건조</u> 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u>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u>		6. ----- ----- <u>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u>		
제3조(적용범위) (생 략)		제3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② 생략)	제5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②(현행과 같음))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종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		

신 · 구조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생략)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 ----- -----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현행과 같음) 1. ----- -----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2. (생 략)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생 략) ② 시장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u>법 제63조제2항 제2호의</u>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⑤ (생 략)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 재질) ①~③ (생 략)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u>법 제16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u>수거용기에</u> 대하여 수집 · 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현행과 같음) ② ----- ----- ----- <u>법 제63조제3항 제2호의</u> ----- ----- ③~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 재질) ①~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u>법 제12조의</u> ----- ----- ----- ----- <u>전용수거용기에</u> -----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간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④ (생 략)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신·구조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종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 활용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종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료를 받은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여부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② (생 략) 제15조(시행규칙) (생 략)	④ (삭 제)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자원화하는 시설을-----.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범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부과금액(만원)
폐기물관리법	1. (생략)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별제15조 관련)			이상	2차위반
	가~나. (생략)				이상
폐기물관리법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별 제16조제2항 관련)	30	50	100	100
					300
					500
		----- (법 제12조관련) -----			

신 · 구조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별지 제1호시각>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처리기한																			
신 고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처리시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객석 · 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² ☐ 호텔 · 관도 : 객실수 : 실																																																	
규 모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자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kg/월					kg/월					kg/월																													
자가제량용 회										제량용량										제량용방법										제량용장소																													
										kg/월																																																	
위탁제량용 회										위탁제량용량										제량용방법										업소										위탁업소 주소 · 전화																			
										kg/월																																																	
파주시 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 및 제량용 촉진유인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처리구분					처리대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제량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kg/월																																																						
자가감량					kg/월																																																						
자기제량용					kg/월																																																						
위탁제량용					kg/월																																																						
파주시 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 및 제량용 촉진유인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장 (인)																			

<별표1>

신·구조문 대비 표

현	개	정	안
< 별지 제2호 서식 > (생략)	< 별지 제2호 서식 > (현행과 같음)		
< 별지 제3호 서식 > (생략)	< 별지 제3호 서식 > (현행과 같음)		